



84th September 2015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WHERE IS GRACE CHANG?

和同談論 (화동담론)

COVER STORY

[글로벌 무역 동향]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합의

FTA NEWS

올해 내 타결이 이루어 질까?

TPP의 향방

VOICES FROM THE FIELDS

베이징에서의 한-중 FTA 설명회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 고시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⁷³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

물품의 과세가격이 타당한지의 여부

신한 ISSUE

신한 Academy 정기 고객 교육 II

- 품목분류 : 섬유와 자동차 부품 -

ABOUT WRITERS



WHERE IS GRACE CHANG?

 和同談論 (화동담론)



장승희
 대표 관세사

....
 제가꿈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일촉즉발의 군사대치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3박 4 일간의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로 남북이 분단되며 계속되고 있는 적대관계입니다.

공자의 『논어』에는 '君子和而不同(군자화이부동) 小人同而不和(소인동이불화)'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를 줄여 붙인 이름이 '화동담론'입니다. 일반적 해석과 달리 신영복 선생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군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며,
 소인은 지배하려고 하며 공존하지 못한다**.

지난 '8·25 남북합의'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和의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해방 이후 70년간 남북간에 공존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상대를 지배한다는 목표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폭넓게 소통하고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남북간에 和의 상태를 지속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化, 즉 chemical bonding 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번 달 Cover story 는 WTO 정보기술협정(ITA)확대협상 합의에 대한 내용으로 전세계 상품수출의 10%를 차지하는 IT 품목에 관련된 협정입니다. FTA News 는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주요 쟁점사항과 향방을 가늠합니다. Voices From The Fields 는 최근 중국을 방문하여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관련 세미나를 진행한 최대규 관세사의 보고서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나무들도 다양한 모양과 특성을 갖고 제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무들은 함께 모이면 숲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만나는 우리 인간들은 왜 숲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열린 사고로 차이와 다양성을 승인하며 함께 변화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숲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숲』 정희성 詩
 **『담론』 신영복 著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Cover
Story

[글로벌 무역 동향]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합의

지난 7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대사급 회의에 참여한 52개 참가국*들은 201개의 IT 분야 품목들에 대한 무세화 및 향후 진행일정에 합의하였다. 합의 이후, 관련 국가 및 기업들의 많은 관심이 무세화 품목리스트에 집중되고 있는 와중에 이 정보기술협정(ITA)은 어떠한 협정이고, 또 그 혜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가국: 한국, 미국, 중국, EU(28개국), 일본, 호주, 스위스, 캐나다, 노르웨이, 모리셔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터키,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과테말라, 콜롬비아, 알바니아)

1. 정보기술협정(ITA)은 무엇인가?

정보기술협정(International Technology Agreement; ITA)은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 1차 세계 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었다. 참가국들은 회의에서 컴퓨터, 반도체, 통신장비 등을 포함한 주요 IT 제품 및 부품의 관세철폐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로 203개의 IT 제품에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하여 1997년에 정보기술협정(ITA)이 발효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2013년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당 협정으로 인해 그 해에만 약 1,900조 원에 달하는 수입관세 제거효과가 있었으며, 그 실적은 처음 협정이 발효된 때보다 약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정보기술협정(ITA)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이후, 그 설립 취지가 가장 잘 반영된 첫 번째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

2. 확대협상 합의 내용

1996년에 합의된 기존의 정보기술협정에서는 컴퓨터, 휴대폰 등 203개의 주요 IT 제품을 무세화 하였으며, 금번 확대협상에서는 전기기기, 의료기기, 계측기기 등을 추가하고, 소재, 부품, 장비 등 연관 제품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총 201개의 품목이 무세화 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에서 중국 측이 양허제외 대상으로 지정한 25개 품목이 금번 합의된 201개의 무세화 품목리스트에 포함됨에 따라 정보기술협정(ITA)을 통한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 향후 발효 절차

이번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참가국들은 하반기에 참가국별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 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최종 타결되고, 발효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참가국들은 국회 비준동의 등의 국내절차를 밟아 이르면 2016년 7월부터

<ITA 확대협상 품목리스트(201개)>

품목군	품목수	대상 품목(예시)
반도체	6	MCO(attachment B), 전자직접회로 프로세서·컨트롤러(854231), 메모리 반도체(854232), 증폭기(854233)
영상기기	14	TV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852580), 셋탑박스(852871), 디스플레이용 CCFL(853939ex), 아동용 휴대용 교육기기(attachment B), TV·카메라·라디오·모니터 부품(852990ex)
광학기기	13	필터(900220), 기타렌즈(900290), 광학현미경 및 부속품(901180, 901190), 기타현미경(901210)
IT제품 소재	8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접착제(350691ex), 반도체 제조용 필름(370130, 370199), 잉크카트리지(attachment B)
IT제품 제조장비	24	냉각용 팬(841459ex), 열 교환기(841950ex),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필터(842139ex),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848630, 848640, 848690) 진공펌프(attachment B)
계측기기	38	거리측정기(901510), 금속재료 시험기기(902410), 재료시험기기(902480), 전력량계(902830), 전자계측기기(903010 등), 자동제어기(903220)
기계	16	판·실린더 등 인쇄용 기기(844250), 복합형 인쇄기(8443310), 인쇄기 부품(844391), 등사기(847210), 화폐교환기(847689ex)
음향기기	19	마이크·스탠드(851810), 확성기(851821, 851822), 헤드폰·이어폰(851830), 휴대용 라디오(852712), 카 스테레오(852721ex)
전기기기	19	정지형 컨버터(850440), 기타스위치(853650), 스위치·퓨즈 등 전기기기(853690ex), 신호발생기(854320)
의료기기	17	심전계(901811), 초음파영상진단기(901812), 자외선·적외선 응용기기(901820), 안과용 기타기기(901850), X선사용기기 부품(902290ex)
통신기기	6	통신기기 부품(851770), 전송장치(852550)
기타	21	저장장치(852321, 852352 등), GPS(852691), 항공기시물레이터(880521), 영사용 스크린(901060)
합계	201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7월 27일자 보도자료

관세의 단계적 철폐(일반품목 3년, 민감품목 5년, 예외적인 경우 7년)를 진행하게 된다.

많은 기업들이 정보기술협정(ITA)에 많은 관심을 두는 이유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관세절감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복잡한 증명 절차 없이 오로지 정보기술협정(ITA) 적용 대상 물품이기에만 하면 무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IT 분야는 세계 무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이며, 오늘날 IT 품목들은 전 세계 상품 수출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IT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이 정보기술협정(ITA)을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신한관세법인

대리 김 효 선

hskim@customsservice.co.kr

FTA News

올해 내 타결이 이루어 질까? TPP 의 향방

1. 들어가며

지난 7 월 28 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무협의 및 각료 회의는 협상 기한인 31 일까지 타결을 이루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참가국들은 8 월중 각료회의 개최를 포기하고 9 월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어 협정이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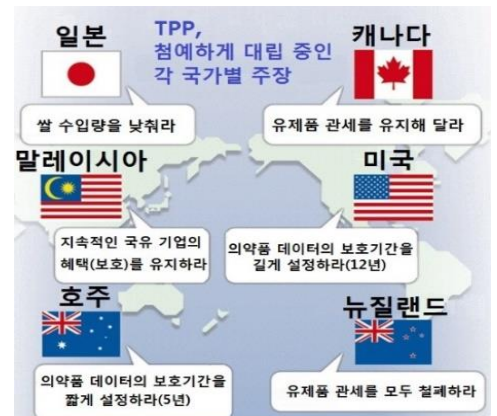
TPP 는 전 세계 GDP 38.2%의 12 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 무역협정으로 협정 타결의 추이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협상 막바지에 유제품 관세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한 뉴질랜드 등 각국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타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2. 주요 쟁점사항

1) 지적재산권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하여 최첨단 약품에 대한 정보 보호기간을 8 년으로 합의하는 안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대형 제약기업을 많이 보유한 미국은 이를 12 년으로 하려는 반면 호주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은 5 년의 보호기간을 주장하며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첨단 의약품의 정보 보호기간에서 양보를 하는 조건으로 유제품의 수출확대를 꾀했으나 캐나다가 10 월의 선거를 앞두고 자국 낙농업을 보호하는데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TPP 타결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됐다.



※ 사진 출처 : 일본경제신문 / KOTRA & globalwindow.org

2) 자동차 부품 원자재 조달율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TPP 참여국 내의 원자재 조달률을 65%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멕시코와 이에 반발하는 일본이 대립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일본은 태국 등 TPP 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원자재 조달 비중이 높다.

3) 공기업 우대정책

공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이나 일본 등은 공기업의 비중이 큰 중국이 TPP 에 가입할 가능성을 고려해 공기업 우대 정책을 견제해왔지만 중국과 유사하게 공기업 의존도가 높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들이 이에 반발하는 구도를 형성해 왔다. TPP 협상에서는 이를 고려해 일부 공기업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규정에 대한 협의는 각료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었지만, 타결이 불발되면서 안건에 대한 마무리가 완료되지 못한 채 남았다.

4) 쌀 수입 쿼터

미국과 일본의 양자회담 또한 쌀과 자동차 부품 문제를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일본은 무관세 쌀 수입 할당량이 7 만 톤 수준에 머무르길 바라고 있지만 미국은 17.5 만 톤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수입과 관련해서 미국은 관세철폐의 수준이 가능한 한 적게 조정되길 바라고 있지만 일본은 자동차 부품 품목의 절반 이상에서 관세가 철폐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3. 향후 전망

내년 가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은 내년 2 월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TPP 협정문을 90 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90 일 룰'을 감안하면 늦어도 8 월 중으로는 참가국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다른 참가국들 역시 미국의 의회 비준에 맞춰서 자국 내 의회의 비준을 진행

해야 하는데,

10 월 총선을 앞둔 캐나다, 현재 국내 정세가 복잡한 말레이시아,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등의 국가들이 TPP 가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 협상 추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TPP 의 향방은 매우 불투명해지게 된다. 차기 미 유력 대권 주자들은 대부분 TPP 를 크게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TPP 에 회의적이었던 민주당의 후보들은 물론, 미 공화당의 유력후보 도널드 트럼프도 TPP 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TPP 참가결정을 위해 필요한 귀중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른 FTA 협상도 마찬가지로였겠지만, TPP 의 경우 우리 경제와 가장 깊게 연관되어있는 일본과의 FTA 라는 점에서 그 어떤 FTA 에 대한 고려보다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계 시장확대"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좋지만, 거의 모든 업종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인 일본 산업계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향후 협상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실익을 극대화 할 기민한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 : 주간무역, "[기한 내 합의 실패한 TPP] 2% 부족한 협상... 막바지 문턱 못 넘고 표류", 2015. 8. 6 김영채 기자

KOTRA global window, "TPP, 표류 가능성 대두" 2015. 8. 10 조병구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종 호
(jhshin@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베이징에서의 한-중 FTA 설명회

지난 8 월 26 일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KOTRA 주관 『한중 FTA 활용 설명회』를 다녀왔다. 이번 설명회는 시안, 대련, 칭다오에 이은 4 번째 설명회이다. 국내에서의 FTA 활용 설명회도 동일하겠지만, 설명회의 세부 프로그램 및 해당 프로그램의 연사, 참석하는 기업·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에 따라 그 성격이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7 월 중국 칭다오에서의 설명회는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칭다오시 상무국, 코트라가 주관을 했던 행사로 중국 상무부 및 기업체의 연사도 함께 참석하였다. 많은 중국 기업인이 참석을 하였기에 한국과 중국 양측의 한중 FTA 에 대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반면 이번 베이징에서의 설명회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FTA 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깊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베이징 설명회는 아래의 연사로 구성이 되었으며, 약 100 여명의 한국기업인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설명회의 내용을 크게 관세·원산지와 인허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관세·원산지 분야에서 현지 기업인들은 한중 FTA 의 누적기준 적용방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판단컨대 중국이 가공무역금지 품목을 점차 확대해가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중의 상당 수가 중국에서 내료가공,



진료가공의 형태로 가공무역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 에서 규정한 누적 기준의 기업체 별 활용방안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내료가공이든, 진료가공이든 원부자재의 수입 시 수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데, 반드시 수출입 수량(또는 잔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량의 관리를 원산지관리와 연계를 시켜 우리 진출기업이 중국현지에서 한중 FTA 원산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인허가 부분에서의 관심사는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기기와 식품(기능성, 보건식품)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이 1 억원 이상이며, 약 1 년~2 년이라는 사실은 한국에서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중국 현지의 설명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어 향후 새로이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및 그들의 FTA 활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었다.

4 번에 걸쳐 중국현지에서 한중 FTA 설명회를 하면서 매 설명회마다 100~200 명을 웃도는 한국·중국 기업인들이 참석을 하였으며, 그 속에서 한중 FTA 에 대해 기업인들의 관심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설명회의 첫 세션을 맡았던 최용민 한국

베이징 설명회 연사	
한중 FTA 시대의 개막과 新비즈니스 전략 - FTA 와 비즈니스 - 한중 FTA 의 주요내용 - FTA 시대의 경영전략	최용민 지부장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한중 FTA 업종별 영향과 활용전략 실무 - 한중 FTA 업종별 영향과 활용전략 - 한중 FTA 비즈니스 활용모델	정환우 박사 KOTRA 중국사업단 조사담당관
Coffee Break	(참석자 간 네트워킹)
한중 FTA 원산지 관리 - 한중 FTA 원산지 기준 - FTA 원산지 관리 실무 - FTA 원산지 판정 및 검증사례	최대규 이사 신한관세법인
축사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중 FTA 대응 중국 인허가 추진전략 - 중국 인허가 개요 - 품목별 중국 인허가 대응전략	임항식 상하이 지사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무역협회 베이징 지부장은 발표의 마지막에 “CEO” 라는 글자로 삼행시를 지어, 한중 FTA 에 대비하는 우리기업의 자세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C - 씨를 뿌리고, E - 이익을 내며, O - 5 년을 내다봐라!”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한중 FTA 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현시점에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한다.

신한관세법인

이사 최 대 규

dkchoi@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개정사유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7일 소비대중화 등을 감안하여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을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연이어 8월 26일 내년 과세 제외가 예고됨에 따른 소비 동결효과 최소화 및 부진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금년 중 경감 탄력세율을 적용 등의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

2. 주요 개정내용

탄력세율은 8월 27일 이후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신

고하는 분부터 적용. 8월 27일 이전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여 판매자 등이 보유중인 재고분의 경우 관할 세무서 및 세관에 신고하여 재고 보유사실 등을 확인받으면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금 인하액 만큼 환급 또는 공제함

*** 현재 (8월 28일 기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전으로써 공포일 이전까지 현행 기본세율 및 기준 가격대로 신고하고 8월 27일 이후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령이 공포된 이후 소급하여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1) 탄력세율 적용('15.8.27~12.31 수입신고분)

품목	세율	비고
승용차	5 → 3.5%	
녹용·로열젤리,향수	7 → 4.9%	
대용량 가전제품	5 → 3.5%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공포일까지는 기본세율 적용, 공포일 이후 환급처리

(2) 기준가격 상향('15.8.27~)

품목	세율	비고
보석·진주, 귀금속, 사진기, 시계, 용단, 모피, 가방	20%	200 → 500만원
가구(조)	20%	800 → 1,500만원
가구(개)	20%	500 → 1,000만원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공포일까지는 기존 기준가격 적용, 공포일 이후 환급처리

3. 적용일자

2015. 8. 27. (시행령 공포 예정)

[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신한's Opinions>>

현재 (8월 28일 기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전 상태로서 공포일까지는 기존 기본세율 및 기준가격이 적용되며, 상기 탄력세율 및 기준가격은 공포일 이후 8월 27일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8월 27일부터 시행령 공포일까지 적용 대상 수입신고분(8월 27일 이전 수입 후 재고품 포함)은 환급 대상 물품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하며, 해당 관세사를 통하여 환급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사유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사항 중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 5년부터 10년까지 달리 정하도록 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대상범위 구체화, 대국민 전달력 제고를

위해 명칭을 명확화, 리튬이차전지의 대상 범위를 변경하는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던 품목을 위해도에 따라 5년이상 10년이하

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나. 안전관리대상 범위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은 대상에서 제외하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전기용품에 한하여 관리대상에 포함토록 규정

다. 산업전용 또는 특수목적 대형제품 등이 포함된 규정을 제품별로 적정 정격입력을 적용토록 개선

라.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 기기용 스위치, 차단기류에 대하여는 국제표준 및 안전기준에 맞게 대상 범위를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한정

마. 대국민 전달력 제고를 위하여 대상품목의 명칭 등 명확화

- 용·복합 전기용품의 경우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 문구 정비
- 전화기 접속단말기를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로 변경
- “전기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전기스토브”로 하여 단서조항 삭제하고, “펠릿 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정비
- 안전인증·안확인신고의 면제확인에 대한 문구 명확화

바. 전지 및 전격살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 범위 변경 및 전지 표시방법 개선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공시 제2015-276호

3. 시행일자 : 2015. 8. 1.

단, 별표 2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범위에 대하여는 2015년 8월 4일부터 적용되며, 제3조제1항2호 및 별표 2의 개정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러목 산소이온발생기 세부범위 중 이온발생기
2.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버목 전기세척기 세부범위 중 오존수 발생장치
3.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모목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세부범위 중 전격살충기
4. 별표 2 제10호 정보·통신·사무기기 머목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세부범위에 포함되는 리튬이차전지 에너지밀도 400Wh/L 이하인 것

<<신한's Opinions>>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해당 되는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으로 위해도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이 세분화되고 유효기간이 5년~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위해도가 낮은 미용기기, 주방용 전동기기 등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되어 전기용품 안전인증·확인 등에 대한 행정적 절차 및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바, [별표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범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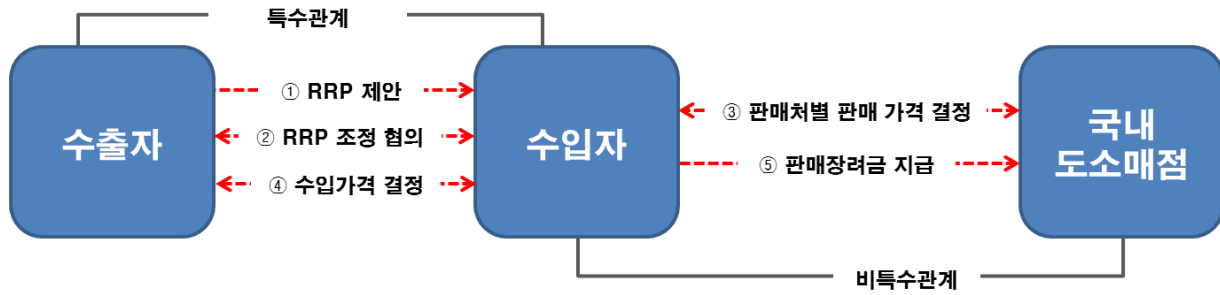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isyoo@customsservice.co.kr)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 물품의 과세가격이 타당한지의 여부 (선고 2009 누 108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7.1)



* RRP : 권장소비자가격(Recommended Retail Price)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이하 "수입자")은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로부터 플라스틱 조립완구를 수입하고 당사자 간 협의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출자가 수입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자의 당기 수익률을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조정한다는 점 등을 사유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 33 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 방법에 의하여 수출자와 수입자가 협의한 권장소비자가격 (RRP, Recommended Retail Price)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여 과세전통지하였다. 수입자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일부 기각되었고,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

2. 쟁점사항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및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이 적정한지의

여부

3. 청구법인 주장

(1)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본 물품의 수입가격은 시장의 경쟁상황, 판매 관련 제비용, 당기 이익 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 3 자 간의 거래와 같이 정상적인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가격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므로 해당 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과세가격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권장소비자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의 적용 요건 중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구매자인 도·소매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았기에 과세가격이 과대 계상되었다.

4. 관련 법령

관세법 제 30 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중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 31 조부터 제 35 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중략)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략)

관세법 제 33 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중략)

① 제 30 조부터 제 32 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 1 호의 금액에서 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중략)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후략)

5. 판결

(1)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수입자의 영업상 손실뿐만 아니라 영업외비용까지 보전하는 가격, 심지어 제조원가 이하로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입자가

항상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 매출액 대비 2%의 흑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호 '특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세 가격은 관세법의 과세가격과 목적과 산출방법이 다르므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수입자가 수입 신고한 가격은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 과세가격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수입자는 국내 판매가격을 수출자와 협의하여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을 토대로 국내 구매자와 협의하였고, 그 가격이 수입자의 당기순이익을 2%로 유지하기 위해 조정된 수입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점, 국내 구매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국내판매가격으로 정당하다. 다만,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제공한 판매장려금은 매출에누리로서 국내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3) 결론
법원은 먼저 수출자와 수입자가 특수관계에 있고 해당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은 부인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처분청이 관세법 제 33 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이 사건 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면서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원고의 국내판매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았고 이를 기준가격으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즉 수출자와 수입자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쳐 최초 수입신고한 가격이 부인되어야 함은 타당하지만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사용된 국내판매가격에서 일부 요소가 공제되지 않아 이를 기준으로 경정고지된 금액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동 현

leedh@customsservice.co.kr

신한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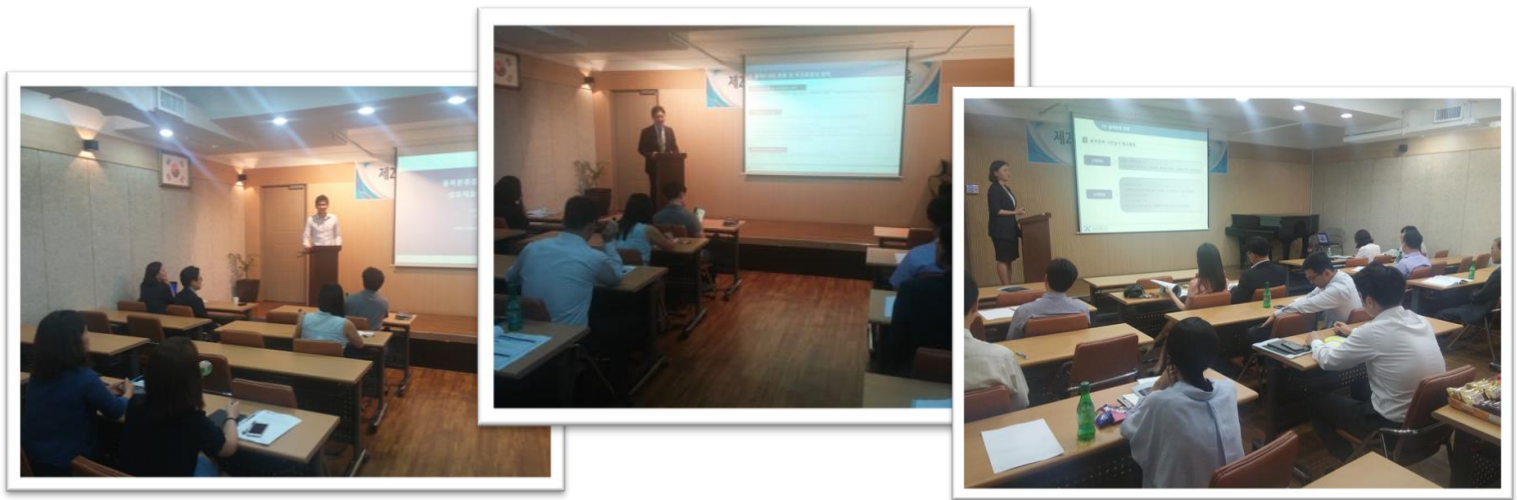
신한 Academy 정기 고객 교육 II

- 품목분류 : 섬유와 자동차 부품 -

8 월 27 일 '제 2 회 신한 Academy 정기 고객 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신한관세법인에서는 품목분류와 관련한 수출입 업무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섬유제품의 품목분류와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분들께 귀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신한관세법인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ABOUT WRITERS

COVER STORY -

[글로벌 무역 동향]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합의



김효선 대리
hskim@customsservice.co.kr

FTA News-

올해 내 타결이 이루어 질까?
 TPP의 향방



신중호 관세사
jhshin@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베이징에서의 한-중 FTA
 설명회



최대규 이사
dkchoi@customsservice.co.kr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유입세 관세사
isyoo@customsservice.co.kr

Case Analysis of Customs Valuation 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 물품의 과세가격이
 타당하지의 여부



이동현 관세사
leedh@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글로벌 자문 부문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 원산지관리사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글로벌 자문 부문
-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자문 컨설팅
-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리 컨설팅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글로벌 자문 부문 부부장
- 관세사, 미국공인회계사
-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자문 컨설팅
- FTA 원산지관리사 시험 출제, 선정위원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건설/기계 통관 및 품목분류 전문
- 환급컨설팅 전문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글로벌 자문 부문
- HS 품목분류 컨설팅
-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자문 컨설팅
-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리 컨설팅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